

#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  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 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등록금심의위원회 8차 회의		일 시	2017.11.21.(화) 09:00
		장 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김태호, 이호선, 김인준, 이태준, 김민주 (이상 6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 예산편성 담당자: 배수현 차장(예산평가팀)		
불참위원	전수빈 위원 (이상 1명)		
의 제	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·의결		

## ◎ 회의내용

### 1. 개회선언

#### 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,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심사·의결을 안건으로 함.
- 미리 배포한 2017학년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(안)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질의·응답을 진행하기로 함.

### 2.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

#### 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2017학년도 추경예산(안)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, 주요 계정과목의 수입, 지출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함.

#### 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지 및 교사매입 관련 적립금 인출은 계약금 용도인지, 계절학기 수업료는 매년 12억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간 사

- 계약금 용도로 책정된 금액이며, 계절학기 수업료는 교무팀에서 책정한 예상 수입을 반영하고 있으며, 매년 계절학기 신청학생 수는 큰 변동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 수입이 본예산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상당액 줄어들었는데, 그 원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본예산 대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2016학년도 결산에 대비해서는 수입이 증가하였음. 올해 예산 책정 시 평생교육원에서 정한 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며 전년대비 수입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타 대학과의 경쟁 심화, 교내 공간의 부족 등으로 평생교육원 수입 규모 확대가 여의치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 수입액이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함.
- 수입 내역에서 국제교류팀의 기타수강료수입은 어떠한 명목으로 받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내 한국어교육센터의 정규과정 외의 수강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며, 규모가 크지는 않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타 대학에도 이와 같은 수입이 있는지, 타 대학 대비 수입 규모가 어떠한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공개된 타 대학의 자료는 없으나, 우리 대학의 한국어교육센터의 규모는 타 대학 대비 큰 편으로 볼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 전입금 규모가 본예산 대비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, 전체 규모는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법인 전입금은 연금 및 건강보험 등에 소요되는 법정부담금으로 교직원 수의 증감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며, 예상 인원보다 교직원 수가 감소하여 본예산 금액 대비 줄어들었음. 전년 대비 전입금 규모는 증가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 전입금은 반드시 연금 및 건강보험을 보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전입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질의함.
- 법인전입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학우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며, 학교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우리 대학의 법인이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법정부담금 이상의 금액을 전입할 수 있겠으나 현재 법인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으며, 법정부담금액을 모두 전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간 학교 측의 답변을 보면 법인의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,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떠한 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재벌 그룹 대학 법인이라 하더라도 전입금이 많은 것은 아니며, 우리 대학의 법인은 서울 지역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상위에 해당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은 수익 규모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법인은 수익용 자산을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그 금액을 학교로 전입하는 것임.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교에 전입금을 전입하는 것이 중요함.
- 수익 증대를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며, 만약 잘못되면 법인에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의 위기가 곧 학교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상위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육부에서는 법인의 수익용 자산을 통해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위기로 수익이 감소할 경우 학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본예산에서는 일반기부금이 없었다가 추경예산(안)에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, 기타기부금의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

- 본예산에서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,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부금이 발생하여 계정만 일반기부금으로 옮긴 것임.
- 기타기부금은 그 내용을 별도로 분류할 수 없는 소액의 기부금들을 모아놓은 내용상의 분류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사우디정부장학생 기부금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, 여기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세계 100대 대학에만 해외 국비장학생을 파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원이 감소하고 있음.
- 사우디정부장학생 기부금은 학생들의 수업료, 튜터 비용,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대학의 수입에 포함되어 운영되므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.
- 경력개발센터의 현장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인 Corep 과정을 사우디정부에 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는 등 대학에서도 사우디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일반기부금 수입은 건축기금적립에 대응하는 것인지, 학교발전기금은 구체적으로 어디로부터 받은 금액인지 질의함.

■ 간사

- 일반적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 있으며, 학교발전기금은 개인 1명이 낸 금액은 아니

고 동문회 등 여러 곳에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국가장학금의 감소 원인은 내부요인인지 외부요인 때문인지 질의하고 CK-II 사업 및 LINC 사업의 지원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국가장학금 규모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부요인임.
- 사업의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되면 지원금이 증가하며, 올해 우리 대학의 2개 CK-II 사업단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음.
- 그밖에 우리 대학은 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국가 연계 취업중점대학사업에 선정되었으며, 총학생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육부 지원금 내역 중 ‘국가근로장학금 등’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‘국가근로장학금 등’이라고 표기한 것은 기타기부금 사례와 같이 소액이면서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용도의 장학금을 포함하여 명시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 운영비 보조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최초로 신설된 것인지 질의하고, 교내외 임대시설의 종류에 대해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

- 처음 신설되어 지원받은 것이며, 교내 임대 시설로는 매점, 주차장 등이 있으며 교외 임대 시설에는 교외 기숙사 내 편의시설 등을 꼽을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내에 있는 영빈관은 외부인을 대상으로 숙박 제공 사업을 하는 곳인지 질의하고, 체육대학 교양수업에 대한 기타교육부대수입은 어떤 내용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외부인에게 숙박시설로 임대하는 수익 사업을 하지는 않으며, 우리 대학과 관련하

여 방문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임.

■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

- 체육대학 교양수업은 여름이나 겨울 시즌에 가능한 수상스키, 스키 등의 수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하는 것이며 징수한 만큼 모두 지출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수업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 교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,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음에도 국고자금 이자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아니라 일부 신청학생만 참가하는 교양수업이므로 실비를 징수하고 있음.
- CK-II, LINC 사업의 실지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, 국가장학금의 경우 예상액이 감소한 만큼 이자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사 및 교지 매입 변경에 따른 기금 인출 금액과 건설가계정의 지출 금액을 비교하면 인출 금액이 적은데, 차액은 어떻게 충당하는 지 질의함.
- 장기차입금의 비교란에 교지 매입 등 지연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차입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차입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간 사

- 차액은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었다고 할 수 있음.
- 2017학년도 예산으로는 차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내년 예산은 본예산(안) 책정 시 별도 논의할 사안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교원 보수와 관련하여 전체 정년트랙, 비정년트랙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요청함.
-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등 전체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교육의 질 확보에 앞서 양적인 측면에서 교육권 확보가 필요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정년과 비정년의 구분은 계약의 문제이고 연구에 대한 책임의 차이일 뿐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고 오히려 교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

당하는 사항이므로 요청하는 정보를 전달하기는 어려움.

-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질에 있어서 정년트랙 교수와 차이가 없음.
- 전임, 비전임 교원 수와 관련한 정보는 다음 회의까지 전달하겠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비정년트랙 교수의 강의 질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수 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적정한 등록금 산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님.
- 고등교육법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보면 등록금의 적정 산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으로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,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수준, 물가상승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에 국한하여 살펴보아야함.
- 전체 교수의 보수 규모가 나와 있고 학생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임. 따라서 정년, 비정년 트랙 교수 수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직원보수에서 신규임용보다 퇴직이 많음에도 총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

- 임용과 퇴직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예를 들어 신규임용은 연초에 진행되고 퇴직은 연말에 하게 되면 총액이 증가할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본예산에서는 북악관과 본부관 시설 개선을 합하여 건축물관리비 계정에 5억이 책정되었으나 추경예산(안)에서는 북악관 시설 개선 9억만 있음. 공사가 변경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본부관 공사는 취소하고 학생 관련 시설인 북악관 환경 개선에 모두 투입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이러한 시설 개선 계획의 경우 설계도 등 관련 정보를 미리 공유할 필요가 있음

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아쉬움이 큼.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은 좋지만 그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.

- 건축물관리비 중 전기통신설비관리비 내역의 금액이 본예산 내역과 비교하였을 때 증감 수치가 다름.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
- 리스임차료와 관련 어떤 차종을 리스하고 있으며, 리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총 4대이며, 차종은 제네시스와 그랜저이고 차량 운영비가 저렴하고 목돈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매입보다 리스가 더 유리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일반용역비 중 위탁소송용역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소송이며 소송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도서관 옆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한 소송임.
- 최근 이슈가 된 소송 비용의 교비 유용 사례는 소송의 이익이 개인에 귀속되기 때문이었으며, 본 사안은 학교 부지와 관련한 것이므로 소송의 이익은 학교에 귀속되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소송주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소송 주체는 관련 부서에 정확히 확인하여 별도로 알려주겠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교육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 시 모두 공개하고 검토하는 등 감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회의비 계정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기타운영비 계정에 회의 관련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사학회계기준에 따라 회의비는 회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, T/F 등 회의체에서는 회의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. 따라서 회의



이외에 필요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기타운영비 계정에 예산을 책정한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청춘공감 장학금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반영된 것인지, 교외장학금에서 학생지원팀 장학금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서 총당한 것은 아닌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생지원팀 교외장학금은 외부에서 기탁하는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며, 교외장학금 재원으로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.
- 청춘공감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계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기타 외부장학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, 임대보증금은 매년 본예산에 책정되었다가 추경예산에서 감소하는데 본예산에 반드시 책정되어야 하는지,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기타외부장학금은 국민 후원의 집 등 외부에서 기부한 재원으로 구성된 장학금임.
- 교내 입정한 매장의 임대보증금이므로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, 예측이 어려운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므로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액은 어디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부 등록금 수입에 포함되어 있으며, 내국인 학생 등록금 수입 감소분을 상쇄하여 반영된 것임.

3. 폐회선언

- 2017학년도 추경예산(안) 심사·의결과 관련하여 차기 회의는 2017.11.29.(수)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하고,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7. 11. 21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

위원장      정 승 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 원      김 인 준

위 원      이 호 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 원      이 태 준

위 원      전 수 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 원      김 민 주

위 원      김 태 호